

2020년 공공 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데이터 전문교육

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

2020,8

CONTENTS

01 법 제정 필요성

02 법 주요내용

03 기대효과

04 후속조치





01 법제정필요성

1 법 제정 목적

- 경험, 직관에 의존했던 기존의 의사결정
 - 현재에는 **데이터 요청, 제공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가 없어**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을 제한적으로 활용하여 분석
 - 결국 필요한 관련 정보의 부족과 미 제공으로 인한 공백을 주관적인 경험과 직관으로 메워야 함
 - 또한,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및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 미비
- 객관적 증거·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
 - 데이터 요청, 제공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간 데이터 공유 및 분석 활성화 도모
 - 데이터 기반 **객관적 정책 수립**으로 행정의 **책임성 및 신뢰성 확보**
 -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





중앙 나에게 얼마는 중요에 얼마가 되었다면 '선... 에 살에게 있다'면서 '데이어 가는 중당 구선을

mat kingra kintato" z kinemi, al wai



は まためた (1985年 1987年 19

SEASTHER REALESS RESIDES THE THE POLY SERVI

① 1 추진 경과

■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(안)」제정 추진('17.1~, 정부입법)

입법예고(17.5.8~6.19) 부처 의견 조회(17.5.8~22) 공청회(17.6.16) 법제처 심사(17.9.20~12.15)

- 차관회의 상정(17.12.22) 국무회의 상정(17.12.26) 국회제출(17.12.28) 및 전체회의 상정(18.1.31)
- 한국정책학회 공동세미나 개최(18.9.12) **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 개**최(19.8.26)
- 법안 심사소위 통과(20.5.19) **행안위 전체회의 통과**(20.5.19) **법사위 전체회의 통과**(20.5.20)



< 국회 본회의 수정가결(20.5.20) >

○ 재석 171인 중 찬성 171인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수정안 가결

02 법주요내용



02 법 주요내용

■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

-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(행정안전부장관, 3년) 및 시행계획(중앙·지자체의 장, 매년) 수립
- **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** 설치(민간위원장 + 관련 공공기관 공무원 + 민간전문가)
 - * 기본계획 등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, 데이터 제공거부에 대한 조정 등 심의

■ 데이터 등록 및 제공절차

- 공동 활용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'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'에 등록
- 데이터 이용 목적 등을 명시한 문서로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에 데이터를 요청
- 예외사유*에 해당하지 않는 한 **요청받은 데이터에 대한 제공 의무화**
 - *비밀로 규정된 경우,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

데이터 관리체계

-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 메타데이터 등을 수시로 수집하여 데이터관리체계(예: 국가데이터map) 마련
-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효율적 제공·분석·연계를 위한 **'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**' 구축
-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해 **기관별 데이터 분석센터** 및 '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' 설치·운영
 - * 多기관 관련 주요 현안의 해결 및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 지원

① 2 법 주요내용

목적

-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하여 행정의 책임성 및 국민 삶의 질 제고
-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 마련

추진분야

- 주요정책 수립 등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국민 의견 수렴
- 비교·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대책 마련 및 맞춤형 서비스제공
- 안전·질병 등사전에 위험 예측 및 제거 방법 제시
- 경제·사회 등 분야에서 미래 수요 충족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
- 비용절감이나행정처리절차개선

추진체계

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

- 주요정책,기본계획 수립·변경
-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
- 국가적 차원 데이터 분석 사항 심의

정책기반 마련

- 기본계획(행안부, 3년)
- 시행계획(기관별, 매년)

데이터 등록 및 제공

데이터 등록 및 제공

-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데이터 등록
- 기관간데이터 요청,제공및 조정
- 민간데이터 요청(구매, 협약등)
-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관리

기반구축

데이터 통합 관리

- 기관별 메타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'데이터관리체계' 구축
- 데이터의 효율적 제공·분석·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해 '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' 구축

데이터 분석센터

- 기관별 분석센터 설치·운영
- 데이터기반국가적 중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설치

조직 및 인력

-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
-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지정·운영

평가

- 데이터 제공 및 활용성과 등 점검·평가
- 데이터기반행정 성과 포상

02 행안위 수정가결 주요내용

데이터의 정의

● "데이터"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<mark>된 상태의 정보로서</mark> 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것을 정보를 말한다.

주요 추진분야

○ 신속한 의견수렴, 맞춤형서비스, 안전, 선제적 대응, 행정효율 증가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분야를 기존 제4조에서 삭제하고 제8조(데이터의 등록 등)에 삽입

데이터 등록 요청

● 행정안전부의 공동활용 필요 데이터 조사 기준과 절차·방법 및 데이터 등록 요청 등에 대해 시행령 추가 위임

위원회

○ 기존 심의 기능에 조정 기능을 추가로 명시하고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을 구체화

▋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

- 위원회,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본계획 확정 요건을 <mark>위원회 심의 만으로 간소화</mark>(실태점검 결과 공개도 동일)
-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(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)

■ 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

● 민간데이터 제공 요청의 방법을 기존 업무협약 등에서 계약에 의한 구매, 업무협약 등으로 추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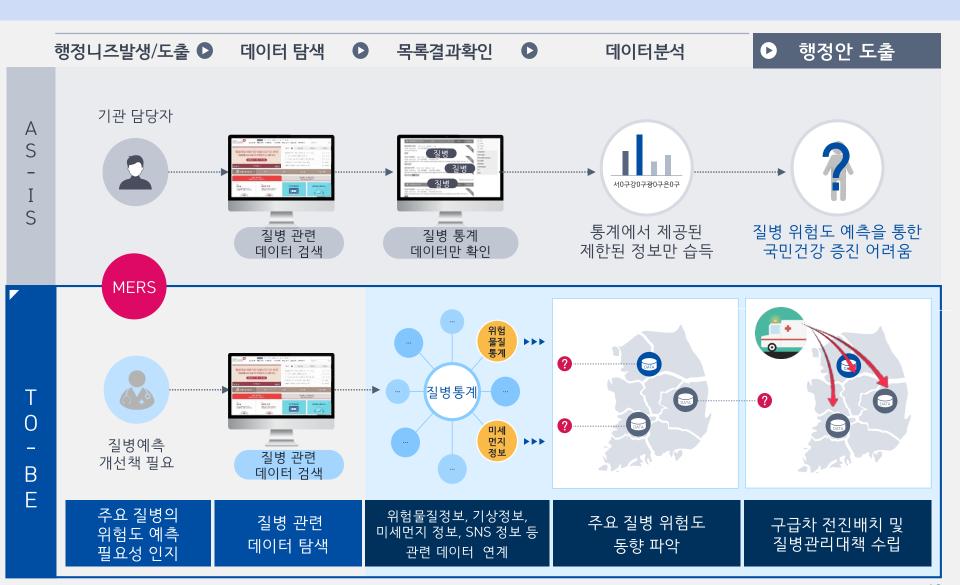
03 기대효과



03 기대효과-소방서비스



03 기대효과-복지서비스



03 기대효과



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국민과 기업이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

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지·의료·교통·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사회 현안 해결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리성 제고

정부

그간 직관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행정을 통해 <mark>행정의</mark> 능률성·신뢰성 제고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 제고

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및 국정과제·다 부처 관련 데이터 공동 활용 및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상호간 협업 활성화

⇒ 법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범국가적 빅데이터 활성화 분위기 조성

04 후속조치



● 4 후속 조치

■ 하위법령 제정 TF 구성 및 운영

-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위임사항 및 기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고시(가이드라인) 제정 필요(20.12.10 법 시행 이전)
 - → 공공기관의 범위,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, 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절차, 데이터의 등록·제공 절차, 제공거부 조정절차, 데이터행정책임관의 역할, 데이터분석센터 운영 등
- 법 및 데이터기반 행정 전문가(교수, 변호사, 민간기업 등) 6인으로 구성
- 하위법령 초안 마련(~20.6월)→입법예고 및 의견수렴(~10월)→하위법령 제정(~12월)→고시(안) 마련(~21.1월)

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구성

- 법 제5조에 따른 위원회(30명)에 대한 위원 위촉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 추진
 - → 분과위원회 구성안 : 법제도, 데이터 조정, 공동활용/인프라, 분석협력
-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(~20.12월) →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심의

■ 기본계획 수립 WG 구성 및 운영

- 3개년의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(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수립)
- 비전, 전략 및 주요과제 도출(~20.7월)→ 초안 마련(~8월)→ 의견수렴(~10월) → 최종안 마련(~11월)

■ 데이터관리체계 구축

- 메타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관계도 제공 등을 위한 범정부 데이터관리체계 구축 운영 지원
-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연구 추진(~20.12월)

04 우리원의 역할(1)

제5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

-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사무국 역할 지원
- 제6~7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
 -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(3년 단위) 및 시행계획(1년 단위) 마련 지원
- 제8~9조 데이터 등록·수집·활용
 - 국가 공동활용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지원
 - 국가적으로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로 지정하여 등록 요청할 목록 지정, 등록 기준 및 절차 ·방법 등 마련 지원
- 제10~13조 제공 요청-제공 범위-제공 결정-제공 거부 조정, 제15조 제공받은 데이터의 관리
- 각 기관이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요청-제공 결정-활용 후 파기-제공 거부-조정을 위한 절차서 및 양식 작성 지원
- 제공 거부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·운영 지원
- 제14조 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
 - 공공부문 내에서 민간데이터의 효율적 제공 및 유통을 위한 제도 마련 지원
- 제16조 데이터관리체계 구축
 - 메타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관계도 제공을 위한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운영 지원(20.4월 범정부데이터플랫폼 구축 완료)
- 제17조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
 -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 데이터, 플랫폼 등과 관련된 표준 조사·연구, 지침 마련 및 협의기구 구성·운영 지원

1 우리원의 역할(2)

■ 제18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

-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전문기관(NIA)이 활용할 분석시스템 구축 지원
- → '20년 6월에 현재 분석시스템인 혜안시스템(행정망)을 원내 연계 예정

■ 제19조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

○ 임명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 대한 업무 교육 및 데이터관리체계관련 민원 대응 지원

■ 제22조 실태점검 및 평가

● 데이터기반행정 추진관련 실태 점검 및 평가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평가단 구성·운영 지원

제23조 우수사례 발굴·보급

●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등 지원 계획마련, 포상 및 홍보 지원

■ 제24조 전문인력 양성

○ 데이터기반행정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데이터 직렬과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 지원

■ 제25조 민간 및 해외협력

● 민간의 우수한 데이터기반행정 기술 및 인력 교류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선진국들과의 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 지원



감사합니다